

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증개정규칙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1998.10. 13 이경진의원외 6인

나. 회부일자 : 1998. 10 . 20 .

다. 상정일자 : 1998. 11 . 3 제6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3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○ 직위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전환을 위하여 '98 조직개편시
계제가 폐지됨은 물론 평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
개정됨에 따라 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을 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하부조직인 의사계를 삭제하고, 의사계의 업무분장을 의회사무과로 조정, 전문위원
직급을 삭제

4. 검토내용

가. 98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계제가 폐지되고 평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
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전문위원 직급이 조정되어 명문화됨에 따라 평창군
의회사무과직제규칙을 이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문제점
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평창군의회교육위원회보자선출규정폐지규정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1998.10. 13 이경진의원외 6인
- 나. 회부일자 : 1998. 10 . 20 .
- 다. 상정일자 : 1998. 11 . 3 제6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3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의한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시군 및 자치구 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시·도의회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었으나, '97.12.17일자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선출권역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의회훈령으로 존치해 있는 평창군의회교육위원회보자선출규정을 폐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평창군의회교육위원회보자선출규정 폐지

4. 검토내용

- 가. 1997.12.17일자로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관한 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의회교육위원회보자선출규정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.